

光州廣域市西區保健診療所設置 및 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

1995年 9月
總務社會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5年 9月 12日
- 나. 提出者 : 光州廣域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5年 9月 20日
- 라. 上程日字 : 1995年 9月 25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5年 9月 25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保健所長 白 落 朱)

가. 提案 事由

-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(제15조, 제16조 및 제17조)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보건진료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과 보건소의 명칭을 개정코자 함

나. 主要骨子

- 보건진료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용한다로 개정
-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용두진료소, 매월진료소를 용두보건진료소, 매월보건진료소로 개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李海萬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음

8. 其他 事項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'위촉한다'를 '임용한다'로 한다.

【별 표】 보건진료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중 보건진료소란 '광주광역시 서구 용두진료소'를 '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보건진료소'로 하고 '광주광역시 서구 매월진료소'를 '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보건진료소'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4조 (보건진료원) ①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.</p> <p>②보건진료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중에서 <u>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</p> | <p>제4조 (보건진료원) ①----- -----.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<u>임용한다.</u></p> |

[별 표]

보건진료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

| 보 건 진 료 소 명 | 위 치 | 관 할 지 역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보건진료소 |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275 - 3 | 용 두 동, 서 창 동 |
|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보건진료소 |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460 - 8 | 매 월 동, 세 화 동 |